##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5

발의연월일: 2020. 8. 24.

발 의 자 : 남인순 · 박성준 · 황운하

홍성국 · 박영순 · 강득구

이성만 • 맹성규 • 전혜숙

김승원 · 강선우 의원

(11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또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이외의 처벌조항이 없어 부정 청구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양식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또한

제도 도입 후 하위법령이 부재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요 양기관의 급여비용 부정 청구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기요양보 험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양식의 목적에 맞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 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7조).
- 나.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 도입 후 하위법령이 만들 어지지 않고, 실제 운영되지 않아 삭제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삭 제).
-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받은 처분이력을 지정 심사에 고려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행정 처분 이력의 범위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등을 포함하여 장기요 양기관의 종사자로 확대함(안 제31조제3항제2호).
- 라.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67조제1항 신설).

### 법률 제 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각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각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을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으로 한다.

제45조제2호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를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로 한 다.

제48조제2항제5호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법률 제17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②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	③
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	
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u>표준장기</u>	개인별장
<u>요양이용계획서</u> 를 작성하여 이	기요양이용계획서
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	4
기요양인정서 및 <u>표준장기요양</u>	<u>개인별장기요</u>
<u>이용계획서</u> 의 작성방법에 관하	<u>양이용계획서</u>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특별현금급여	3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u>&lt;삭 제&gt;</u>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	
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	<u>&lt;삭 제&gt;</u>

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 원장기요양급여

②·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렁으로 정한다.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① 공단 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 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 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 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 저 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u>표준장기요양이용계</u> <u>획서</u>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 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 요양인정서와 <u>표준장기요양이</u> 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u>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u>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 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 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 인정서와 <u>표준장기요양이용계</u> <u>획서</u>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

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생략)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저 • ② (생 략)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생략)
-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u>장기요양요원이 이 법</u>
  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 4. (생 략)

 ④ ~ ⑥ (생 략)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조

· ⑤ (현행과 같음)
세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② (현행과 같음)
3
1. (현행과 같음)
2
<u>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u>
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
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
3.•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세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및 기능)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 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 1. (생략)
-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 3. 4. (생 략)
-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생 략)
  -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관장한다.
  - 1. ~ 4. (생 략)
  -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 공
  - 6. ~ 14. (생략)
- ③ ④ (생 략) 법률 제17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벌칙) <u><신 설></u>

- 1. (현행과 같음)
- 2.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 3. 4. (현행과 같음)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현 행과 같음)

- (2) -----
- 1. ~ 4. (현행과 같음)
- 5.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6. ~ 14.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u>에 처한다.</u>
<u>①</u> ~ <u>③</u> (생 략)	<u>②</u> ~ <u>④</u> (현행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와 같음)